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26	
수정 전	1. 제3자의 심판 참가
수정 후	1. 심판 참가 ('제3자의' 삭제)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90	
수정 전	(4) 甲의 청구기간 적법여부 甲이
수정 후	甲의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07	
수정 전	물음2) 의 답안 변경 [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 부분 추가]
수정 후	1. 문제의 소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은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의 신청이 있다. 2. 행정심판 ※ 교재내용과 동일 3. 가구제 ※ 교재내용과 동일 4. 사안의 해결 甲은 특별분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.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07	
수정 전	물음3) 의 답안 변경
수정 후	**1. 문제의 소재** 행정심판의 결과 인용재결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,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. 행정심판법은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. **2. 직접처분**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**3. 간접강제**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**4. 사안의 해결** **1)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** 이주대책의 일환인 특별 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이며 또한 그 내용은 재량에 해당하므로,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. **2) 甲이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** 거부처분취소심판은 직접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안의 경우 간접강제가 가능하다.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34	
수정 전	2)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(4)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자
수정 후	2)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(4)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51	
수정 전	1. 직권주의에 의한 진행 기일의 지정 및 변경,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, 송달 등은 절차의 진행
수정 후	1. 직권주의에 의한 진행 기일의 지정 및 변경,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, 송달 등의 절차의 진행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52	
수정 전	3. 기간 ~ 비송사건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하며,
수정 후	3. 기간 ~ 비송사건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며,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66	
수정 전	3) 재항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하여 대법원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이다. 4)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
수정 후	3) 재항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이다. 4)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

행정사실무법 사례/단문(이준희) p.168	
수정 전	(2) 항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 ~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할 때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.
수정 후	(2) 항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 ~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할 때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.